

# 【 공 고 】

2025년 지부집단교섭 잠정합의안

## 찬반투표 총회

지부 규정 제10조, 제11조, 제34조에 의거  
2025년 지부집단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  
원 찬반투표 총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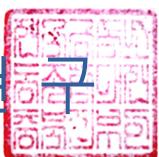
□ 일시 : 2025년 10월 20일(월) 00:00  
~ 10월 23일(목) 17:00

□ 장소 : 각 사업장 지정된 장소

2025년 10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장 권 현 구



# [2025년 지부집단교섭 잠정합의안]

## 「통일 요구안」

### 【작업중지권】

- ① 회사 내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노동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작업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③ 조합은 1, 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발생하여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지 않는다.
- ④ 1, 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발생하여 안전·보건상 개선 조치가 필요할 때, 회사는 개선 조치 이행 후 조합에 알려 확인토록 한 뒤 작업을 재개한다.
- ⑤ 회사는 1, 2항에 따른 작업 중지·대피를 이유로 징계, 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소·고발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단,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작업중지권 제도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 「중앙교섭 요구안」

### 【기후위기대응】

- ①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집행한다.
- ② 회사는 협력사 지원 정책 마련, 협력사 선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1, 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저감 계획 집행 현황을 조합에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아래 각호에 대해 기존 노사협의기구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연 1회 진행한다. 단, 기후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조합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응해야 한다.
  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의 점검·보완
  2.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
  3. 탄소중립 환경 구축으로 초래되는 노동조건 변화 대응책 마련
  4.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환경 변화로부터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 【금속산업 최저임금】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420원과 월 통상임금 2,354,9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및 관계사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 「지부요구안」

1. 임금인상 : 지회별 보충교섭에서 논의한다.

2. 임금의 정의 및 임금체계 개편

1. 임금의 정의

1) '임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조합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조합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3)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근로조건의 기준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협약, 취업규칙은 무효로 하고, 해당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3.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저하 금지

1) 회사는 전 조합원의 임금체계 개편 시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통상적인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2) 임금체계 개편을 하는 경우 조합(지회)과 사전에 합의 후 개편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체계 등을 정하고 있는 제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단, 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3. 노조활동시간 보장

1) 회사는 금속노조 및 대전충북지부 주관 회의나 교육시 지회 담당간부들의 참여시간으로 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지회에서 기존에 합의된 내용이 이보다 상회할 경우 그에 따른다.

2) 상집간부 활동시간 추가 보장 : 연 4시간을 활동시간으로 추가 보장한다.

4. 발암물질, CMR 독성물질 사용금지 및 예방, 배상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사업장 발암물질 및 CMR 독성물질 조사사업을 매2년마다(홀수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조사사업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② 회사는 발암물질 및 CMR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발암물질 및 CMR 독성물질 제거를 위해 샤워장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③ 동일 사업장 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에 대한 발암물질 및 CMR 독성물질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건강한 (안전한) 제품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

④ 현재 불가피하게 발암물질 및 CMR 독성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공정은 현장조사를 통해 대체물질 확보 등 노사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⑤ 직업성 암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자 배상과 대책을 강구한다.

⑥ 발암물질 및 CMR 독성물질 조사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2025년 8월 07일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KBI코스모링크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테스트테크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	한국JCC
코스모링크지회	코스모촉매
테스트테크지회	리텍
한국JCC지회	한온시스템
코스모촉매지회	로버트보쉬코리아
리텍지회	유수종합물류
한온시스템대전지회	한국KDK
한온시스템평택지회	대한이연
한국로버트보쉬지회	
한온시스템대전사내하청지회	
한국KDK지회	
대한이연지회	